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17
----------	-------

발의연월일 : 2025. 11. 07.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이달희
김용태 · 곽규택 · 이만희
배준영 · 강대식 · 정연욱
조승환 · 안상훈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주기, 방법 및 그 밖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u> <u>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u> <u>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u> <u>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u> <u>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u> <u>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u> <u>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u> <u>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u> <u>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u> <u>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u> <u>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u> <u>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u> <u>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u> <u>간, 내용, 주기, 방법 및 그 밖</u> <u>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에 필</u> <u>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u> <u>정한다.</u>
<u><신 설></u>	<u>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u> <u>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u> <u>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u> <u>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u>

<신 설>

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u>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	----------------------